

공사적격심사기준

<최종공포일 2019.11.11.>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전력기술(주)에서 집행하는 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공사(이하 “사전심사대상공사”라 한다)의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 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한국전력기술(주)에 직접 제출한 자료 최근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는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은 자료로 평가)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2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기술능력평가 항목중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결산서로 평가하며, 업계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지)에 의한다.
-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업체가 한국전력기술(주)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 나-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8.01.11>
-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 마. ‘라’ 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 1) 결산서
 - 2)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9>를 지정일시까지 직접 제출한 경우
- 바. ‘마’ 목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10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 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10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 한다.
-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라’ 목 및 ‘바’ 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 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 (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 (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 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 시공평가결과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해당 심사분야 또는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이 기준 별표10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 ⑤ 신인도 평가 시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기준은 한국전력기술(주)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전력기술(주)의 임원 및 주임급 이상 퇴직인력(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을 고용한(시행일 이후 채용) 경우를 적용한다. 단, 정부(한전포

함)임명직은 제외하며 별표15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 3 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 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대상공사(사전심사기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추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 한다.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를 포함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

제 4 조 (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8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

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케 하여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6과 별표8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서류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 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이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 선정한 하수급 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서류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

<삭 제>

제 6 조 (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등 관련 계약예규와 한국전력기술(주)의 관련 기준등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2013.12.16)

1.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은 공포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2.24)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7.02.24]

부칙 (2018.01.1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8.01.11]

부칙 (2019.04.04)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9.04.04]

부칙 (2019.11.1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9.11.1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각 분야별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2호의 분야별 평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시공경험(12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점 × 12/45
- 기술능력(12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기술능력평점 × 12/41
- 시공평가결과(2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 2/10
-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7>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 신인도(±1.2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24/100
 -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신인도 평점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 <별표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 <별표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시공경험(12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12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200%이상 : 12.0점 B:165%이상 : 11.0점 C:130%이상 : 10.0점 D: 90%이상 : 8.9점 E: 50%이상 : 7.8점 F: 50%미만 : 6.6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12점) 주)2.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2 (단, 평점상한은 12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 기초금액×5) 단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운영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토목 공사1.5, 건축공사2.0)) 준설공사는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2.0)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함

주)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 대상 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

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인정기준 규모는 입찰 공고에 명시)

주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 가.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능력(12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4호에 의한 기술능력 평점× 12/41

* 단,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 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시공평가 결과(2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4호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2/10

*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7>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 신인도(-2.2 ~ +1.2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24/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 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자리창출 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의 공사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3)
	② 2등급인 자	(+2)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명세 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로 심사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0.5)	

주1)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 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일자리창출기업 신인도 평가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

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같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라.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마.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신인도 평점

2. 입찰가격 평가(30점)

- <별지 #1> 입찰가격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 <별표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 <별표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 방법	실적 사항	점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참조]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함

주)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 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 점수 = <별지 #3-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인도(-1.9 ~ +0.9)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18/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별지2]에 의한 평가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신인도 평점

2. 입찰가격 평가 (50점)

$$\circ 5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6>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경영상태 평가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삭 제	3) 삭 제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주 :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발급(확인)되어 기한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4)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11.0점 E : 30%이상: 9.7점 F : 30%미만: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1. 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 가격 기초금액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3.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2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2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4. 주)2와 주)3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경영상태 평가(15점)

-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 신인도 (-1.0 ~ +4.0)

-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신인도 평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자리창출 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의 공사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3)
	① 1등급인 자	(+2)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명세 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로 심사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0.5)
근로시간 조기 단축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주1) 일자리창출 기업 중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일자리창출 기업 신인도 평가

- 별지#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70점)

$$\circ 7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 기초금액×1/2)	-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2.와 같음 -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함

- 주)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 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1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1.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 주) 1과 주) 2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경영상태 평가(10점)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 신인도 (-1.0 ~ +4.0)

-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신인도 평점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circ 8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공사	최근 3년간 공사실적(당해 업종 구분없이 평가)	$\text{점수} = \text{실적계수} \times 5\text{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frac{\text{공사 실적 합계액}}{\text{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1/2}$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4.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3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3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5. 주)3과 주)4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경영상태 평가(5점)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 신인도 (-1.0 ~ +4.0)

-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신인도 평점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circ 9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신인도 (-1.0 ~ +4.0)
 -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신인도 평점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circ \quad 9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 2) 평가등급의 ‘A’ 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3) 평가등급의 ‘B’ 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발급되어 제출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 가. 새로 등록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나. 새로 등록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5)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일반공사)와 2억원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p>※ 주 : <별표 1>의 주1) 및 주5) 을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p>				

<별표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별표 1>의 주1) 및 주5) 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미만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포함)의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별표4>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사종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고
A	① 현수교, 사장교, 연속교, 연도교, 해상교량, 이차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B	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 건설공사 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0.85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 ~ 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C	① A 및 B등급이외의 교량공사 ② 항만공사(준설, 매립공사제외) ③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D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 고속도로공사	0.95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E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표 5>

하도급 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수급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 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건설산업 (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 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3.0%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전력기술(주) 사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 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5.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자급차제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 예시에서 (B/A × 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20%이상 B: 1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 지급할 금액/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100
계		14	10	

-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은 <별표 5>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 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를 말한다.
4.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내역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4)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 노무비율 = $\frac{\text{직접노무비} + \text{간접노무비}}{\text{입찰금액}} \times 100$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기준율의	기준율의
		100%이상	90%이상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	9	8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율의	기준율의	기준율의
	100%이상	80%이상	80%미만
점 수	1	2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기준율의	기준율의	기준율의
	100%이상	85%이상	85%미만
점 수	0.5	1	0.5

- 주)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9>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text{기초총자산} + \text{기말총자산}) \div 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 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 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업종별	연도별 실적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 (점)
가. 사전심사기준(조달청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름)	사전심사기준
나.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 위반 1건 (1명 기준) - 위반 2건 (2명 기준)	-0.5 -1.0
다. 추정가격별 신인도 평가기준 -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사전심사 대상)인 공사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 -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8천만원, 전문공사: 1억원)인 공사	별지 #1 참조 별지 #2 참조 별지 #3 참조 별지 #4 참조 별지 #5 참조 별지 #6 참조 별지 #7 참조

<별표 11>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2>

적격심사신청서

- 공 고 번 호 :
- 공 사 명 :
- 입 찰 일 시 :

위 권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한전기술 계약관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입찰자 주소 :
- 회사명 :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 귀하

접 수 증

- 1. 공고번호 :
- 2. 공 사 명 :
- 3. 제 출 자 :

위 권 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 (인)

<별표 13>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	
업 종 구 분	

2.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사무실	
	H.P	
FAX No.		
E-mail		

3.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자기 평점	심사 평점
당해공사 수행능력				
입찰가격				
합 계				

※ 첨부 : 자기평점 내역서

<별표 14>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 명세서 (공사실적 리스트)

신청공사명 :

<동일공사 실적 내용>

(단위: 천원)

공 사 명	신청 공종	규 모	금 액 (관급제외)	시공자	준공일자
합 계					

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사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전력기술(주) 귀하

주) 1건의 동일 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별표 14>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퇴직당시 직급	고용일자	현직위	비고
	임원	임원			
	수석급	수석급			
	주임급	주임급			

※ 퇴직당시 직급 :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시 직급을 의미함

2. 타 경쟁사의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 근무 인지사항

경쟁사명	퇴직당시 직급	인적사항	비고
	임원		(관련참고사항 기술)
	수석급		
	주임급		

※ 퇴직당시 직급 :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시 직급을 의미함

3.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심사 평가기준 (적격심사, PQ 심사, 제안서심사)의 신인도 평가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